

표준약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p> <p>1.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p> <p>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p>	<p>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p> <p>1.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 ----- 도달하거나 ----- ----- ----- ----- ----- ----- -----</p> <p>2. ----- -----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 ----- ----- 도달하거나 ----- ----- -----</p>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9조(카드이용의 제한) ① (생략)</p> <p>②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신고 계좌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기타 카드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신설></p>	<p>제9조(카드이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6. <u>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u> 	
<p>제3조(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p>	<p>제3조(카드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카드의 소유권은 저축은행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p> <p>③ 유효기한이 경과된 카드와 갱신발급 등으로 인한 구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저축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p> <p>④ 전 각 항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책임은 ----- ----- 귀속되며 저축은행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 내에서 회원의 책임은 경감됩니다.</p>	
<p>제15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위·변조된 카드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저축은행 등에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p> <p>2. 카드의 양도,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p>	<p>제15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 ----- ----- ----- ----- ----- -----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회원용)】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2조(카드의 이용 및 제한) ① · ② (생략) ③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신고 계좌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u>기타 카드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p><신설></p>	<p>제2조(카드의 이용 및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6. <u>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u>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위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2. 저축은행 및 센터에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저축은행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저축은행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기타 이용자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개별통지를 합니다. 다만, <u>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사전통지가 불가능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후통지를 할 수</u> 있습니다.</p>	<p>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u>이용자의 불법행위가</u> ----- ----- <p>②----- <u>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u> ----- ----- <u>긴급하게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통지</u> ----- -----</p>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7조(금융정보조회 중단) ① 저축은행은 <u>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u></p> <p>1. <u>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2. <u>그 밖에 저축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②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p>	<p>제7조(금융정보조회 중단) ① ----- ----- <u>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u> ----- -----</p> <p><삭 제></p> <p><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10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관련예금약관, 상호저축은행 내규 등을 준용합니다.</p>	<p>제10조(준용규정) ----- ----- ----- ----- 등을 ----- -----</p>	

【간편이체 약관】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7조(서비스 중단)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이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 장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저축은행 또는 서비스 제휴사 등의 사정(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일시적 장애발생 등)에 따라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저축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u>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u> 	<p>제7조(서비스 중단)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p><삭 제></p>	

【현금카드이용약관】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7조(약관의 준용)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이 정한 C D공동이용업무 규약 및 시행세칙, 상호저축은행 내규 등을 따릅니다.</p>	<p>제7조(약관의 준용) ----- ----- ----- 등을 ----- ---</p>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④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⑤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⑥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⑦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⑧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⑨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③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제4조의2(대출청약 철회) ①「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의한 일반금융소비자인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② 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3.12.>

③ <삭제 2021.3.12.>

④ <삭제 2021.3.12.>

⑤ <삭제 2021.3.12.>

⑥ <삭제 2021.3.12.>

⑦ <삭제 2021.3.12.>

[본조신설 2016.12.19.]

제4조의3(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총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총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03. 3. 3, 2006.7.10., 2016.12.19., 2023.2.20.>

③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총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④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3. 3. 3, 2024.1.15>

1.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024.1.15**>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개정 2024.1.15>**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2017.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 ②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14.8.20>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개정 2015.10.2.>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개정 2015.10.2.>
- ③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

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④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①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삭제 2014.8.20>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정 2014.8.20>

⑤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저축은행과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2020.2.12.>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총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총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총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총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총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총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총당순서를 법정총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총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총당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총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총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상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종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용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20.12.3.>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개정 2018.4.20.>

제20조의2(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본조신설 18.11.1]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 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1.3.12., 2022.8.30>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제1호·제2호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신·구 대비표 포함) 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2.8.30>

③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⑤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내용은 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대출약정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제1조(회원) ①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본인회원이란 당해 저축은행에 요구불예금계좌(이하 “결제계좌”라 함)를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조(연대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이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3조(카드의 관리) ①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카드의 소유권은 저축은행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유효기한이 경과된 카드와 갱신발급 등으로 인한 구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저축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저축은행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 내에서 회원의 책임은 경감됩니다. <개정 2024.1.15>**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②카드의 유효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재발급 등으로 유효기한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①저축은행은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카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신규 및 갱신 발급시 연회비 징수시기는 발급등록일 기준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청구합니다.

②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저축은행은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③저축은행은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저축은행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저축은행과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2항 이외의 별도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징수내용 및 징수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6조(카드의 비밀번호) ①회원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자리 숫자의 카드 비밀번호(이하 “비밀번호”라 함)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은 저축은행이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거래시마다 신고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조회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7조(카드의 이용한도) ①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저축은행이 정한 범위내에서 회원이 지정할 수 있고, 카드 발급시 또는 이용 대금명세서 송부시 통보해 드리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기설정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코자 하는 경우 저축은행에 이용한도 변경을 제신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카드의 이용) ①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과 제휴한 업체(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함)의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저축은행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저축은행 등과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카드 회원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약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약시에는 가맹점이 고지한 위약금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용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가맹점과 저축은행 등이 별도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카드이용의 제한) ①회원은 카드를 할부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계좌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15>
6.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신설 2024.1.15>

③카드는 저축은행의 온라인 마감 또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SMS서비스) ①회원의 신청으로 저축은행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이하 “SMS”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결제금액, 결제여부 등 결제관련 사항
2. 카드의 승인 및 승인취소 내역
3. 이벤트 통보 및 각종 카드 관련 정보사항

②저축은행 등은 제1항 이외에 다양한 SMS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SMS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정비 및 수정작업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거나 서비스가 지연, 누락될 수 있습니다.

④저축은행은 SMS 제공의 대가로 회원에게 매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정액의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 등의 사정으로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1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①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저축은행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저축은행이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 및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②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2. 제1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③저축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저축은행의 홈페이지, 앱,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1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전면개정 2022.2.3.]

제12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저축은행은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제13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①회원은 계좌를 개설한 저축은행에 카드를 현금카드 겸용으로 등록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회원이 지정한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②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현금자동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인출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 등은 저축은행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①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저축은행 등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저축은행 등은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접수시간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

액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카드 1매당 2만원의 회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회원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 제3자 보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3.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
4.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5.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6. 분실·도난 신고 후 보상신청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조사 및 부도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인지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하며, 신고 지연기간 내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부담)

④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전에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위·변조된 카드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저축은행 등에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개정 2024.1.15>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 카드의 양도,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

제16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저축은행 등은 현금자동지급기,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저축은행 등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 도난·분실 등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회원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저축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저축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앱,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 드리며, 이 경우 이의제기 등에 대한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2.2.3.>

③회원은 저축은행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연체 등의 정보 보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저축은행 등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개정 2022.2.3.>

⑤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개정 2022.2.3.>

제18조(변경사항의 통지) ①회원은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영업점 또는 체크카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신청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9조(카드이용 정지 및 탈회) ①저축은행 등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약관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개인회원의 사망·이민, 기업회원의 파산·해산의 경우
4. 미성년자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거래중단을 요청한 경우
5. 가족회원인 경우 본인회원과의 가족관계가 소멸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6. 자동갱신 또는 카드 교체 발급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②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에 통지하고 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20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저축은행 등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 등과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탈회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가맹점과 회원이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저축은행 등은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저축은행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자기거래상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본 조에 의한 제공내용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2.2.3.>

⑤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2.2.3.>

⑥제5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신설 2022.2.3.>

[제목개정 2017.8.11.]

제21조(약관의 변경) ①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② <삭제 2022.8.30>

③ <삭제 2022.8.30>

④ <삭제 2022.8.30>

⑤ <삭제 2022.8.30>

[전문개정 2018.1.31.]

[제목개정 2022.8.30]

제22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저축은행 등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은 가맹점과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저축은행 등의 본점 또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4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함)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활용하여 저축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② “이용자”란 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의하여 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지급인”이란 자금을 주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취인”이란 자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⑤ “신청계좌”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결하는 계좌로서 오픈뱅킹공동업무 등록이 가능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를 말합니다.

⑥ “입금계좌”란 서비스 이용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⑦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저축은행이 지급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저축은행이 지급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계정 포함)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 공동업무를 운영·제공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합니다.

⑩ “오픈뱅킹 공동업무”란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와 별도 제휴 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1. “출금이체”란 저축은행이 출금에 동의한 이용자의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저축은행의 수납계정 또는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입금이체”란 저축은행의 지급계정 또는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의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3. “잔액조회”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4. “거래내역조회”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5. “계좌실명조회”란 저축은행이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이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6. “카드목록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7. “카드기본정보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기본정보 및 연계된 결제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8. “카드청구기본정보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청구금액 및 결제일 등 월별청구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체크카드 회원약관(기업회원용)

제1조(회원 및 카드사용자) ①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②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저축은행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③회원은 별도의 사용자를 지정(이하 “지정카드”라 함)하여 카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카드의 이용 및 제한) ①회원은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온라인 마감 또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카드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할부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이 인정하고 회원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인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계좌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15>
6.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신설 2024.1.15>

제3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저축은행은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제4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9.“카드청구상세정보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청구금액에 대한 카드이용내역 등 월별청구상세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10.“선불목록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 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11.“선불연계정보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의 연계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12.“선불잔액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에 대한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13.“선불거래내역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⑪“모바일기기”란 LTE 및 5G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통칭합니다.

⑫“전용 어플리케이션”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⑬“수수료”란 저축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영업점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공합니다.

②저축은행은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4조(약관의 우선순위) ①저축은행은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개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개별서비스에 대한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외규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체결) ①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저축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저축은행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이용계약의 대상은 14세 이상의 고객으로 한정합니다. <개정 2023.2.20.>

③가입신청자가 동의 의사를 저축은행에 전달하게 되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저축은행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④저축은행은 제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저축은행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이용자는 서비스에 연결된 출금계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계약의 해지) ①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관련 법령, 센터 이용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을 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저축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한 경우
4.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개정 2023.2.20.>

③제2항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오류사항의 정정 등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3.2.20.>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저축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SMS, LMS, 이메일, 서면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통지합니다.

②저축은행은 전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제공) ①제5조에 따라 저축은행이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가입신청자는 제2조 제10항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에 동의한 이용자가 되며, 이때부터 저축은행은 신청계좌에 대해 본 약관이 정하는 개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저축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종류) 저축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조회 : 신청계좌의 거래내역, 잔액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대상계좌는 운영기관에서 정함)
2. 금융서비스 :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이체, 상품신규 등 저축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서비스
3. 카드정보조회 : 카드목록, 카드기본정보, 카드청구기본정보 및 상세정보 조회 <신설

2022.3.24.>

4. 선불정보조회 : 선불목록, 선불연계정보, 선불잔액, 선불거래내역 조회 <신설 2022.3.24.>

5. 잔액모으기 : 다수의 신청계좌에서 저축은행의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 <개정 2022.3.24.>

6. 기타 저축은행이 정한 서비스 <개정 2022.3.24.>

제11조(이체대상 및 한도) ①출금이체 및 입금이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이체대상은 현금으로 합니다.

②출금이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운영기관의 이용한도를 따릅니다.

③출금이체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출금하려는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인증) 저축은행은 서비스의 종류 및 보안수준에 따라 별도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의 중단) ①서비스의 이용은 저축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운영기관의 서비스 점검기간

2. 개별서비스 점검, 변경 등 개별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업무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폭동, 테러,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6. 운영기관의 오픈뱅킹 공동업무규약 및 시행세칙, 관련 법령, 정책 변화 등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위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2. 저축은행 및 센터에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저축은행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저축은행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이용자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15>

②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개별통지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개정 2024.1.15>

제15조(수수료) ①저축은행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저축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나 영업점 등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③저축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준수사항) ①저축은행은 서비스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이외 누설 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약관, 세부이용지침, 서비스 이용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준수합니다.

③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2.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중인 모바일기기의 분실, 도난
3. 기타 거래절차상 고객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제17조(손해배상 및 면책) 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개별약관의 책임 및 면책사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준거법 및 합의관할) ①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②이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2.3.24.>

이 약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2.20.>

이 약관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4.1.15.>

이 약관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하고자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참가기관인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한 금융정보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③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 “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⑤ “금융정보조회”란 사용자가 이용기관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한 경우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중계센터를 통하여 참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⑥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제3조(금융정보조회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은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참가기관이 보유하는 금융정보가 이용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계좌단위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면 (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ARS 녹취 등에 의한 방법으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사용자가 조회를 신청한 실제 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은행이거나 일정한 규모의 대형 사업자 등 자체인증이 가능한 이용기관일 경우에는 실제 계좌번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신청 및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다시 신청 및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저축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축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저축은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금융정보 종류) 사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
2.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일시, 거래점명, 거래금액, 거래후 잔액, 통장인자내용 등 실시간 거래내역 조회

제6조(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① 사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참가기관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 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실제 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은행이거나 일정한 규모의 대형사업자인 경우 등 자체인증이 가능한 이용기관일 경우에는 실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저축은행은 금융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한 연락처로 사용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저축은행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일괄통보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1년 이내 단위로 일괄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금융정보조회 중단) ① 저축은행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4.1.15>

1. <삭제 2024.1.15>

2. <삭제 2024.1.15>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금융정보조회 해지) ① 사용자는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오픈뱅킹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저축은행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저축은행의 금융정보조회 해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저축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2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금융정보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4.1.15.>

이 약관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계좌간자동이체약관

2003. 7.14 개정
2011.11. 1 개정
2012. 5.16 개정
2019. 8.27 개정
2020. 4.24 개정
2022. 8.30 개정
2024. 1.15 개정

제1조(약관의 적용)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신설 2003.7.14.>

제2조(자동이체) 자동이체란 상호저축은행에 예금계좌(자동대출계좌 포함)를 보유한 거래처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금액을 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03.7.14.>

제3조(자동이체 대상자)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에 자동이체시 인출할 예금계좌(자동대출계좌 포함)(이하 “인출계좌”라 한다) 또는 입금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신설 2003.7.14.>

제4조(신청, 변경 및 해지) ① 거래처가 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이체(신규, 변경, 해지)신청서를 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3.7.14>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지정일 전영업일 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설 2003.7.14>

③ 이체자금이 부족하여 6개월 이상 이체되지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자동이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통지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제5조(자동이체방법) ①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자동이체를 지정한 일(이하 “이체지정일”이라 한다)에 인출계좌에서 지급청구서 없이 이체의뢰금액을 인출하여 입금계좌에 이체합니다. <개정 2003.7.14>

② 자동이체는 인출계좌에 이체자금(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과 자동대출 약정이 체결된 인출계좌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을 이체자금에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③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이체금액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한 때 이체하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④ 같은 날에 동일 인출계좌에서 이체대상이 여러 건인 경우 거래처의 요청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신설 2003.7.14, 개정 2011.11.1, 2012.5.16>

1. 당해 상호저축은행 한도거래 대출상품의 한도초과 미수이자
2. 당해 상호저축은행 대출이자 또는 대출원리금
3.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불입적금

4.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계좌간이체

5. 기타 당해 저축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 등의 이체 자금

⑤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제6조(자동이체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설 2003.7.14>

1. 이체지정일에 인출계좌에 이체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만, 입금계좌가 대출계좌인 경우 및 거래처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합니다. <개정 2011.11.1>

2. 인출계좌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약정대출 연체 등이 있을 경우

3. 입금계좌가 없거나 해약되는 등 이체할 입금계좌가 없는 경우

4.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이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제한이 해소된 경우 이체처리하기로 합니다.

제7조(자동이체 취소) 거래처의 인출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신설 2003.7.14.>

제8조 (계좌이동서비스) ① 계좌간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19.8.27>

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③ 거래처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④ 거래처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제9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신설 2022.8.30>

제10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관련예금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개정 2022.8.30., **2024.1.15**>

간편이체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간편이체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모바일앱’이란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SB톡톡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카카오톡’이란 ‘(주)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3. ‘송금인’이란 저축은행에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 중 간편이체를 이용하여 송금절차를 진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수취인’이란 송금인이 간편이체를 이용하여 이체한 자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5. ‘간편이체’이란 송금인이 저축은행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 후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수취인을 지정하여 송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송금대기’이란 송금인이 간편이체를 이용하여 이체한 자금이 송금인의 계좌에서 출금 되었지만 수취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아 대기중인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서비스의 이용방법)

- ① 송금인이 간편이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앱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카카오톡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② 송금인은 모바일앱에서 수취인의 실명 및 이체금액을 입력한 뒤 수취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이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취인은 송금인이 이체한 자금을 받을 계좌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4조(이용시간 및 이용한도)

- ① 간편이체는 전자금융 계좌이체 가능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를 통해 1일 최대 3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 ③ 간편이체를 통한 이체금액은 송금인이 지정한 전자금융 이체한도에 포함되어 차감됩니다.

제5조(서비스 제한)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출금계좌에 대한 간편이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출금계좌에 대하여 입금계좌지정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2. 고객이 출금계좌에 대하여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출금계좌에 대하여 잔액부족,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예금반환채권 압류,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전자금융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
4. 보안카드번호·(M)OTP번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5회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개정 2020.12.3.>

제6조(서비스 유의사항)

송금인은 간편이체로 송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송금인은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수취인에게만 간편이체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2. 송금인이 간편이체 신청시 입력한 수취인의 실명과 수취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해야만 간편이체 송금이 수취인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3. 저축은행이 수취인에게 입금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수취인이 입금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입금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송금은 자동취소되어 송금인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4. 대기중인 동안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조(서비스 중단)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이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장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저축은행 또는 서비스 제휴사 등의 사정(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일시적 장애발생 등)에 따라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삭제 2024.1.15>

② 저축은행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3조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저축은행의 의무)

- ① 저축은행은 제7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간편이체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② 저축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편이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저축은행은 간편이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지하고 신속히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원활한 간편이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저축은행에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관련 법규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이 이를 위반한 경우 저축은행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약관의 변경)

약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1조(준용)

- ① 간편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거래금융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그 외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현금카드이용약관

제1조(현금카드의 발급 및 이용) ①현금카드(이하 "카드"라 함)는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현금자동입출기(이하 "지급기"라 함)를 이용하여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하 "예금"이라 함)계좌에서 인출시 사용합니다. <개정 2008.1.14>

②카드이용 신청시에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반드시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계좌의 통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카드는 예금주 본인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④카드 발급시에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지급기에 의한 인출) ①지급기는 상호저축은행이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며, 지급기 설치장소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경비책임은 상호저축은행이 지지 않습니다.

②카드에 의한 1회 인출금액 한도와 인출금액 단위 및 지급기의 이용시간 등은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만,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지급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정 12.05.16., 15.9.30>

③지급기에 카드를 삽입하시고 지정하신 비밀번호와 금액등 화면내용을 조작하면 현금이 인출되며 매 거래시마다 지급기가 거래명세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지급청구서에 같음하고 1부는 인출금액과 잔액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④지급기 장애로 인하여 온라인단말기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제시한 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청구서에 의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청구서에 기명날인 없이도 지급청구에 같음합니다.

⑤지급기에 의해 당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회수이상 인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을 온라인 창구에 제시하여 그동안의 거래내용을 정리하여야 카드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⑥최근 1년이상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이체 및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저축은행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이체 및 인출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체 및 인출제한이 해제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신설 2015. 6.11., 개정 2017.8.11., 2020.12.3.>

1.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당일
2. 그 외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다음날

제3조(계좌간 이체) ①카드에 의한 계좌이체는 입금의뢰서 또는 예금청구서 및 통장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계좌이체 금액한도와 단위 및 이체가능한 계좌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만,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지급기를 통한 계좌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정 15.9.30>

제4조(카드의 분실, 도난 등) ①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이나 당행 본지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개정 및 후단 신설 2016. 8.11>

② 카드의 위조, 변조, 도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개정 2016. 8.11>

제5조(카드의 반환 및 이용중지) ①예금의 전출 또는 해지시에는 카드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삭제 <2016. 8.11>)

②지급기의 고장, 정전 등의 사고나 온라인 취급에 필요한 기기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카드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 8.11>

제6조(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카드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조(약관의 준용)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이 정한 CD공동이용업무 규약 및 시행세칙 등을 따릅니다. <개정 2022.8.30., 2024.1.15>

[제목개정 2022.8.30]